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803호

나. 발 의 자 : 김형재 의원(찬성자 24명)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 (안 제10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¹⁾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박물관 자료수집과 관련한 원칙을 신설하였고, 박물관이 소장품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이와는 별개로 1998년²⁾부터 동 조례의 이전 조례인 「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」³⁾에 의거하여 박물관 자료(유물)의 관리·수리·복원·복제·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료(유물)관리관 등을 지정하고 있음.

1) 제9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) ...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전문인력, 수장(收藏)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. ...

2) 한성백제박물관 분리(2015년) 이전.

3) 2016년 7월 18일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타법폐지 되었음.

-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은 청계천박물관, 한양도성박물관, 서울생활사 박물관, 우리소리박물관 등 고유한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분관을 두고 있음.

따라서 분관에서도 박물관 자료를 자체 등록 및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며, 본관과 분관 간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임 형태로 자료관리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.

다.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(안 제10조제1항)

- 동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 공무원에 대해 분임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	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- 동 조례안의 ‘자료관리관 등 지정’은 상위법령의 의무 부과를 이행하는 규정이므로,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‘별도의 분임 지정’을 신설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유한 역사적 소재로 구분되는 박물관 자료의 관리 안정화를 도모하고, 통합적인 박물관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운영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김예영(2180-8114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의안번호
2803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안건 소관 상임위	규제철폐 안건
	김형재 의원	문화체육관광위	해당없음
주요내용	〈제안 이유〉 ○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 극대화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소장자료의 관리·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 지정(안 제10조의제1항)		
추진경과	○ '25. 5. 26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※ 찬성자: 김규남, 김혜영, 송경택 등 24명		
부 서 검 토 의 건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(제11조)에 '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출납공무원'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, 상위 조례에 '분임'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은 부재 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11조(분납자료관리관 지정 등) 시장은 개별 박물관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<u>분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.</u> ②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에 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. ○ 동 개정조례안은 '분임'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, 분관 자료 관리 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의 일관성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원안가결이 타당함 ※ 주요 입법 요지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 완료		
대응방안	○ 이견 없음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		
담당부서	박물관과	팀장 박성은(☎2133-4183)	담당 정익승(☎4237)